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7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8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임호선 · 박용갑
박수현 · 조계원 · 윤준병
이성윤 · 신정훈 · 이병진
조인철 · 김준혁 · 전종덕
김영진 · 문금주 · 위성곤
소병훈 · 허 영 · 이원택
이강일 · 복기왕 의원
(2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,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

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, 교육내용의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5).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5제1항 중 “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”을 “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”을 “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내용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실시, 위탁,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수정·보완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5(현장실습 안전교육 등)	제9조의5(현장실습 안전교육 등)
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<u>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</u> 을 실시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 <u>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</u> (이하 이 조에서 “ <u>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</u> ”이라 한다)----- -----.
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<u>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</u> 을 그에 필요한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 -- <u>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</u> ----- ----- ----- -.
<신 설>	③ <u>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할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</u>

<u><신 설></u>	④ <u>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내용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<u>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의 실시, 위탁,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·권익보호 교육 내용의 사전 검토 및 수정·보완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